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기준서

Basel Ⅲ leverage ratio framework and disclosure requirements

이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기준서」 책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14.1.12일 발표한 「Basel Ⅲ leverage ratio framework and disclosure requirements」를 번역한 것으로 동 내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2-750-6895(한국은행), 02-3145-8063(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차　례】

Ⅰ. 개　요 ····· 1

Ⅱ. 정의 및 최소 규제비율 ····· 2

Ⅲ. 연결 범위 ····· 2

Ⅳ. 자본의 측정 ····· 3

Ⅴ. 익스포저의 측정 ····· 3
(a)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On-balance sheet exposures) ····· 4
(b) 파생상품 익스포저(Derivative exposures) ····· 5
(c)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exposures) ····· 9
(d) 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 ····· 12

Ⅵ. 공시 기준 ····· 12
(a) 공시 시행일, 주기 및 위치 ····· 13
(b) 공시 양식 ····· 14
(c) 요약비교표 ····· 14
(d) 공통공시양식, 설명표, 중요 불일치내역 설명 및 여타 공시기준 ····· 15

Ⅶ. 경과 조치 ····· 18

<부록> 레버리지비율 관련 바젤 Ⅱ 조항 ····· 19

Ⅰ.개　요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은행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부외(on- and off-balance sheet) 레버리지의 과도한 축적이었음. 많은 경우 은행들이 외형상으로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음. 가장 극심한 위기시 은행권역은 시장으로부터 레버리지 축소 압력을 받았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은행 손실 → 자본 감소 → 대출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2. 바젤 Ⅲ 체계는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의 보완수단으로서 단순하고, 투명하며, 리스크에 기반하지 않은(non-risk based)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함.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급격한(destabilising)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

   -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반하지 않은 보완수단(backstop)을 마련함으로써 리스크에 기반한(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

3. 바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형태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중요

   - 신뢰성 있는 레버리지비율은 은행 레버리지의 원천이 되는 재무상태표 항목과 부외 항목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수단임

4.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은행이 레버리지비율과 구성요소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기 시작한 2013.1.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5.1.1.일부터 공시가 시작될 예정임. 레버리지비율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calibration)과 레버리지비율 정의에 대한 추가 조정은 201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18.1.1.일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최저비율규제(Pillar 1)로 전환되어 시행될 계획

5. 이 문서는 2015.1.1.일부터 적용될 공시기준과 함께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규정한 기준서로서 종전 규정(Section V of Basel Ⅲ: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1])을 대체함

Ⅱ.정의 및 최소 규제비율 (Definition and minimum requirement)

6.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은 자본(분자)을 익스포저(분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text{레버리지비율} = \frac{\text{자본}}{\text{익스포져}}$$

7. 바젤위원회는 병행운영기간(parallel run period) 동안 현재 3%인 레버리지 최소규제비율을 계속 점검할 계획임. 추가적인 경과조치는 제59항~제61항에서 기술

Ⅲ.연결 범위 (Scope of consolidation)

8.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는 리스크 기반 자본 규제체계와 동일한 규제목적상 연결 범위를 적용함. 동 연결범위는 바젤 Ⅱ 규제체계의 "Part Ⅰ"(연결범위)에 규정되어 있음[2]

9. 규제목적상 연결대상이 아닌 은행, 금융회사, 보험사 및 일반기업(commercial entity)의 자본에 대한 투자 처리: 동 기관들은 규제목적상 연결대상이 아니므로 자본 투자(기초자산이나 여타 익스포저가 아닌, 동 자본 투자의 장부가치)만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 포함됨. 다만, 제16항에 의해 기본(Tier 1)자본에서 차감되는 이들 기관에 대한 투자분은 일관성을 위해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

1)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의 이전 버전으로 바젤Ⅲ 기준서 제151항~제167항 참조 (www.bis.org/publ/bcbs189.htm)
2) www.bis.org/publ/bcbs128.pdf 참조

Ⅳ.자본의 측정 (Capital Measure)

10. 레버리지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자본은 바젤 Ⅲ 기준서 제49항~제96항에서 정의된 리스크 기반 자본 규제체계의 기본(Tier 1)자본이며 경과규정[3]을 고려함. 즉, 레버리지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특정시점의 자본은 리스크 기반 자본 규제체계에서 동일한 시점에 적용하는 기본(Tier 1)자본임

11. 바젤위원회는 경과기간 중 레버리지비율의 자본으로서 「보통주 자본」이나 「총자본」을 사용했을 때의 영향도 측정하기 위해 자료를 계속 수집할 계획임

Ⅴ.익스포저의 측정 (Exposure Measure)

12. 레버리지비율의 익스포저는 일반적으로 회계적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됨

-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익스포저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이나 평가조정(예: 신용평가조정)을 반영한 순액으로 산출

  *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 대손충당금에 해당(역자 註)

- 예금과 대출 간 상계는 불허

13. 아래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은행의 익스포저는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 담보, 보증, 기타 신용리스크 경감기법 등을 사용하여도 축소되지 않음

14. 은행의 총익스포저는 a)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b) 파생상품 익스포저 c)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d) 부외(OBS) 항목의 합계로 구성. 4가지 익스포저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아래에서 정의됨

---

3) www.bis.org/publ/bcbs189.htm 참조

(a)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On-balance sheet exposures)

15. 은행은 모든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익스포저에 포함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거래 및 증권금융거래와 관련된 담보자산도 포함됨. 다만, 제18항~제37항이 적용되는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 자산은 제외[4)]

16. 그러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바젤 Ⅲ 기준서 제66항~제89항에 따라 기본(Tier 1)자본에서 공제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익스포저에서도 공제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음

- 은행, 금융회사 및 보험사가 제8항에 명시된 규제목적상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자본 투자는 바젤 Ⅲ 기준서 제84항~제89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자본 또는 기타 기본자본에서 전액 또는 부분 차감되며 동 차감분은 익스포저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 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자본 산정시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 바젤 Ⅲ 기준서 제73항은 예상손실 대비 적격 대손충당금 적립 부족액을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차감분은 익스포저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17. 부채항목을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 또는 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부채의 회계가치 조정분(바젤 Ⅲ 기준서 제75항에 규정)은 익스포저에서 차감되어서는 안 됨

---

4) 은행이 현행 회계처리기준(operative accounting framework)에 따라 수탁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경우, 동 자산이 IAS 39의 재무상태표상 제거 요건을 만족하거나 IFRS 10의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레버리지비율을 공시할 때 은행은 인식하지 않은 수탁자산의 범위도 제5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함

(b) 파생상품 익스포저 (Derivative exposures)

18. 파생상품 처리: 파생상품은 2가지 유형의 익스포저, 즉 a) 파생계약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익스포저 b)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CCR, counterparty credit risks) 익스포저를 발생시킴.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아래에서 명시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2가지 익스포저를 포착

19. 은행은 파생상품 익스포저[5](은행이 신용파생을 통하여 신용보장을 매도한 경우 포함)를 제20항에 따라 현재 익스포저(current exposure)에 대한 대체비용(RC)[6]에 잠재 익스포저(PFE, potential future exposure)에 대한 추가항목(add-on)을 합산하여 산출해야 함. 만약 부록에 명시된 적격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동 익스포저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처리됨.[7] 신용파생 매도는 제29~31항에 따라 추가 기준이 적용됨

20. 부록 제8항과 제9항에 명시된 적격 상계계약이 없는 개별 파생상품은 다음의 방법으로 익스포저를 산출함

    - 익스포저 = 대체비용(RC, replacement cost) + 추가항목(add-on)
    - 대체비용(RC) = 시가평가로 이익이 발생한 계약의 대체비용(양의 값만 산출)
    - 추가항목(add-on) = 계약의 잔존만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익스포저(PFE)로서 이는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에 부록 제1항과 제3항의 추가항목 환산율(add-on factors)을 곱하여 산정함

21. 양자 간 상계(Bilateral netting): 부록 제8항과 제9항에서 규정한 적격 양자 간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동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상계처리한 순 대체비용(RC)과 순 추가항목(add-on)인 A_{Net}(부록 제10항)의 합으로 산정

---

5) 이 방법은 바젤 Ⅱ 규제에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커런트익스포저방식(Current Exposure Method:CEM)를 참조함. 바젤위원회는 커런트익스포저방식의 대안을 고려중이며 만약 커런트익스포저방식이 대체될 경우 대안적 방법이 제18항에서 설명한 파생상품거래의 2가지 익스포저를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판단할 것임

6) 자국 회계기준상 특정 파생상품이 부외계정(off-balance sheet)에 해당되어 회계상 익스포저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 은행은 동 파생상품의 양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대체비용으로 사용해야 함

7) 동 방법은 바젤 Ⅱ 상계 기준이며 바젤 Ⅱ 부록 4 Section Ⅲ에 명시된 이종(異種)상품 간 상계(cross-product netting) 기준은 제외

22. 담보 처리: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담보는 레버리지에 2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침

-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감소시킴
- 은행이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킴(은행은 동 담보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음)

23. 파생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담보가 은행의 파생상품 포지션에 내재한 레버리지를 반드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초 파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결제익스포저가 축소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현행 회계처리기준이나 리스크관리 체계 하에서 상계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한 담보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익스포저와 상계되지 않음. 따라서 제19항~제21항을 적용하여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은행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담보만큼 익스포저를 축소시킬 수 없음

24. 마찬가지로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도, 은행이 현행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제공한 담보금액만큼을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차감한 경우 해당 은행은 동 금액만큼을 익스포저에 추가해야 함

25. 현금변동증거금 처리: 레버리지비율 산정을 위한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거래상대방과 교환한 변동증거금 중 현금부분(cash portion)을 일종의 사전결제(pre-settlement payment)로 볼 수 있음

(ⅰ) 적격중앙청산소(QCCP[8], Qualifying 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수취한 현금은 분리되지 않아야 함

(ⅱ)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 포지션의 시가평가에 근거하여 일별로 산출·교환되어야 함

(ⅲ) 현금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 계약의 결제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수취하여야 함

(ⅳ) 교환된 변동증거금은 거래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담보제공 개시금액(threshold amount) 및 담보최소가액(minimum transfer amount) 제약 하에 파생상품 시가평가 익스포저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어야 함

8) 적격중앙청산소는"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 A Revised Framework - Comprehensive Version(바젤위원회, 2006.6)의 부록4 Section Ⅰ A.일반사항"에서 정의됨

(ⅴ) 파생상품 거래와 변동증거금은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단일 마스터상계계약(MNA, Master Netting Agreement)[9][10]에서 규정되어야 함. 마스터상계계약은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하면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변동증거금을 고려하여, 상계계약에 의해 순지급의무를 차액결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마스터상계계약은 관련된 모든 관할권에서 채무불이행, 부도, 지급불능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실행가능하며 유효해야 함

26. 제25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취한 변동증거금 중 현금 부분(cash portion)은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의 대체비용(RC) 부분을 축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한 현금변동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수 자산(receivables assets)은 다음과 같이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있음

- 현금변동증거금 수취시, 은행은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만큼 파생자산 익스포저의 대체비용(RC, 추가항목 부분은 아님)을 축소할 수 있음. 단, 현행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파생상품 계약의 양의 시장가치가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과 이미 상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현금변동증거금 제공시, 현금변동증거금이 현행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미 자산으로 인정된 경우 은행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미수채권을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수 있음

현금변동증거금은 향후의 잠재 익스포저(PFE, 부록 제10항에 정의된 net-to-gross ratio(NGR) 산출시 포함)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없음

27. 청산서비스 처리: 은행이 청산회원(CM, clearing member)[11]으로서 고객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은행의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와의 거래 익스포저[12]는 중앙청산소 부도시 발생하는 거래 손실을 은행이 고객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면 여타 파생상품거래와 동일하

---

9) Master MNA는 단일 MNA로 간주될 수 있음

10) 마스터상계계약(master netting agreement)은 법적 상계 권한이 있는 모든 상계계약을 포함함. 이는 중앙청산소가 채택한 상계계약에 대해서는 양자 간 거래의 OTC 상계계약에 견줄 만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임

11) 청산회원(CM)은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 Comprehensive Version(바젤위원회, 2006.6월)의 부록 4, Section I, A. 일반사항"에서 정의됨

12) 제27항과 제28항의 "거래 익스포저"는 중앙청산소(CCP)의 지급불능과 무관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증거금을 포함함

게 처리해야 함. 다만, 적격중앙청산소(QCCP) 부도시 동 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저를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됨

28. 고객이 중앙청산소와 직접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은행(청산회원)은 고객의 중앙청산소와의 거래 이행만을 보증하는 경우, 은행이 고객과 직접 거래(현금 변동증거금의 수취 또는 제공 포함)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은행은 이러한 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레버리지비율 관련 익스포저를 제19항~제26항의 파생상품 익스포저로 산정해야 함

29. 신용파생 매도에 대한 추가 처리: 신용파생 매도(written credit derivatives)는 계약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거래상대방리스크(CCR) 익스포저 뿐만 아니라 준거자산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명목 신용익스포저를 발생시킴. 따라서 바젤위원회는 익스포저 측정에 있어 신용파생 매도를 대출이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30. 준거자산 차주의 신용익스포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익스포저 뿐만 아니라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액(effective notional amount)[13]을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 포함해야 함. 유효명목액은 신용파생 매도에 대한 기본(Tier 1)자본 산정 시 반영되는 음(-)의 공정가치 변동분만큼 차감할 수 있음.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액은 동일 준거자산[14][15]에 대한 신용파생 매입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 하에 동 보장매입의 유효명목액만큼 추가로 차감할 수 있음

---

13) 유효명목액은 레버리지파생상품 또는 구조화파생상품 등의 실질 익스포저를 반영하여 조정된 명목액임

14) 준거자산 차주명이 다른 경우에는 오직 동일한 법적실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동일한 것으로 간주. 준거자산이 하나인 상품의 경우, 후순위채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 매입은 이보다 선순위채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매도와 상계될 수 있음(선순위채에 대한 신용사건이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사건을 유발할 경우에 한함). 준거자산이 집단(pool)의 형태일 때 이에 대한 보장매입은 해당 집단(pool)에 속한 개별 준거자산의 보장매도의 합과 경제적 가치가 같을 경우 상계될 수 있음(은행이 유동화구조 전체에 대해서 보장을 매입한 경우 등임). 만약 은행이 준거자산 집단(pool)에 대한 보장을 매입하지만 집단(pool)의 전체를 커버하지 않을 경우(예 : 유동화 트랜치 혹은 n^{th}-to-default 신용파생), 개별 준거자산에 대한 보장매도와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준거자산 집단(pool)에 대한 보장매입이 보장매도 집단(pool)의 부분집합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상계 가능. 다시 말하면 양 거래에서의 준거자산 집단(pool)과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만 상계가 인식될 수 있음

15) 신용파생 매입의 유효명목액이 기본(Tier 1) 자본에 반영되는 양의 공정가치 변동분만큼 감소하는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액은 기본(Tier 1) 자본에 반영되는 음의 공정가치 변동분만큼 차감할 수 있음. 은행이 총수익스왑(TRS)을 통해 신용파생을 매입하고 차익을 순이익으로 기록하였으나, 이를 상쇄하는 기본(Tier 1)자본에 반영된 (공정가치의 감소 또는 준비금의 증가를 통한) 신용파생 매도 가치의 감소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동 신용보장은 신용파생매도분의 유효명목액을 상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음

- 단일 준거자산(single name credit derivatives[16])의 경우 신용파생 매입의 준거자산은 신용파생 매도의 준거자산보다 순위가 같거나 후순위이어야 됨

- 신용파생 매입의 잔존만기는 매도의 잔존만기보다 같거나 길어야 됨

31. 신용파생 매도는 유효명목액이 익스포저에 포함되는 데다 잠재 익스포저(PFE)에도 반영되어 과대평가될 수 있음. 따라서 은행은 신용파생 매도의 개별 잠재 익스포저를 제19~21항[17]에 명시된 잠재 익스포저의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다만, 동 보장매도가 제30항에 따라 상계 처리되지 않고 유효명목액이 익스포저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c)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exposures)

32. 증권금융거래(SFT)[18]의 익스포저는 아래 방법에 따라 측정함. 이 방법은 증권금융거래를 활용한 담보부 대출 및 차입 거래가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근원임을 인식하고 회계처리 방법상의 중요한 차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통적 측정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33. 일반적 처리(은행이 자기계정으로 거래한 경우): 아래 (i)과 (ii)의 합계를 레버리지비율의 익스포저로 산출

(ⅰ)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증권금융거래[19]의 총자산으로 다음 항목을 반영(상계처리 금지)[20]

---

16) 트랑셰상품(tranched products)은 신용파생 매입의 준거채무 순위(seniority)가 같아야 함

17) 이 경우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이 있고 제19항~제21항에 따라 $A_{Net} = 0.4 \cdot A_{Gross} + 0.6 \cdot NGR \cdot A_{Gross}$을 계산할 때 A_{Gross}는 명목액이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 포함된 신용파생 매도에 대한 개별 추가항목(add-on) 금액(즉, 적절한 추가항목 환산율을 곱한 명목액)만큼 감소할 수 있지만, NGR은 조정할 수 없음. 유효한 상계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익스포저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재 익스포저(PFE)인 추가항목은 "0"으로 조정 가능

18) 증권금융거래에는 RP매도, RP매수, 증권대차거래(security lending and borrowing), 증권연계대출*(margin lending transactions) 등이 있으며 시가평가 및 증거금(margin agreement)에 영향을 받음

* 증권의 매입, 매출, 보유, 거래 등과 연계된 대출로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회(역자 註)

19) 적격중앙청산소(QCCP)를 통하여 갱신되고 청산되는 증권금융거래에서 기존 계약들이 갱신 절차에 따라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회계적으로 측정한 증권금융거래의 총자산은 최종계약상 익스포저로 대체됨

- 은행이 증권금융거래에서 수취한 증권을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동 증권은 익스포저 산정 시 제외[21]

-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증권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미수 현금(cash receivables)은 미지급 현금(cash payables)과 상계 가능

  (a) 해당 거래의 명시적인 최종 결제일이 같을 것

  (b) 평상시 및 채무불이행/지급불능/파산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금액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

  (c) 두 거래당사자가 상계 결제(settle net) 또는 동시 결제(settle simultaneously)의 의도가 있거나, 해당 거래들이 기능적으로 상계 결제와 동일한 결제메커니즘에 따라 결제될 것(즉, 해당 거래들의 현금흐름이 결제일의 단일 상계금액과 사실상 동일할 것). 기능적으로 상계 결제와 동일하려면 두 거래가 동일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고, 영업일 종료 시까지 결제되도록 현금 및 일중당좌대출이 제도적으로 지원되며, 해당 거래들과 관련된 담보거래가 현금 상계결제를 무효화(unwinding)시키지 않아야 함[22]

(ii)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CCR)는 잠재 익스포저(add-on for PFE)를 제외한 커런트익스포저방식으로 측정되며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 적격 마스터상계계약(MNA)[23]이 있는 경우, 현재 익스포저(E*)는 동 적격 마스터상계계약에 포함된 모든 거래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한 증권·현금의 공정가치 총액($\sum E_i$)에서 동 거래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증권의 공정가치 총액($\sum C_i$)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0 보다 큰 금액(0 보다 작으면 0이 됨)

$$E^* = \max\{0, [\sum E_i - \sum C_i]\}$$

---

20) 회계목적상 인정된 증권금융거래 자산 총계는 미지급 현금(cash payables)을 미수 현금(cash receivables)과 회계적으로 상계한 금액이어서는 안됨(현재 IFRS와 US GAAP은 이를 허용함). 이러한 처리방법은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상계의 비일관성을 방지할 수 있음

21) 예를 들면 미국 회계기준(US GAAP) 하에서 증권금융거래로 수취한 증권에 대해 수취인이 재담보설정 권리가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자산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됨

22) 이 조건은 증권금융거래의 증권 쪽 거래(securities leg)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미수 현금과 미지급 현금 상계 결제의 완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23) 적격 마스터상계계약이란 부록 제12항과 제13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마스터상계계약을 말함

- 적격 마스터상계계약(MNA)이 없는 경우, 현재 익스포저는 아래와 같이 거래 건별로 산정됨

$$E_i^* = \max\ \{0,\ [E_i\ -\ C_i]\}$$

34. 매각거래로 회계처리(sale accounting)한 경우: 은행이 현행 회계처리기준상 증권금융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레버리지는 증권대여자에게 남아 있어야 함. 그러므로 은행은 증권금융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매각과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를 되돌리고 현행 회계처리기준상 해당 증권금융거래가 자금조달거래(financing transaction)로 취급된 것처럼 익스포저를 산정해야 함(해당 금액을 제33항의 (i)과 (ii)에 포함시킴)

35. 은행이 대리인인 경우(bank acting as agent): 증권금융거래에서 은행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한쪽의 거래당사자에게 고객이 대여한 증권/현금의 평가액과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평가액 간의 차이에 대해서만 보장 또는 보증(indemnity or guarantee)을 제공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증권/현금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가 아닌 두 평가액의 차이만을 노출된 익스포저로 인식하면 됨(은행이 동 거래에서 본인으로 거래한 것처럼). 이는 은행이 거래의 기초가 되는 현금이나 증권을 소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이를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임.

36. 증권금융거래에서 은행이 대리인으로서 고객이 대여한 증권/현금의 평가액과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의 평가액 간의 차이에 대해서만 보장 또는 보증을 제공할 경우 은행은 제33항 (ii)만 적용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해야 함[24)]

37.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지 두 평가액 간의 차이에 국한될 경우에만 은행은 제36항에 명시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익스포저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이 두 평가액 간의 차액에 대한 보증을 넘어서는 경제적 노출이 있는 경우[25)]에는 증권/현금의 전체 금액을 추가로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 포함시켜야 됨

---

24) 제35~37항의 조건 이외에, 은행이 증권금융거래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나 누구에게도 보장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동 거래를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5) 예를 들면 은행이 고객이나 차입자의 명의가 아닌 은행 명의로 또는 은행 고유계좌에서 수취한 담보를 관리하는 경우(예: 분리되지 않은 담보, 현금, 증권을 대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d) 부외 항목 (Off-balance sheet items)

38. 부외 항목은 바젤 II 체계에서 정의된 방식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를 산정함. 부외 항목에는 약정(유동성 지원약정 포함), 무조건부 취소가능 약정, 직접 신용대체거래, 인수, 보증신용장, 무역신용장 등이 있음

39. 바젤 II 체계에서는 부외 항목이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하여 신용 익스포저로 전환됨. 부외 항목의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는 부록 제14항~제22항에서 규정한 신용환산율을 부외 항목의 명목액에 적용하여 산정함[26)]

Ⅵ.공시 기준 (Disclosure requirements)

40. 은행은 연결기준 바젤 III 레버리지비율을 2015.1.1일부터 공시해야 함

41. 시장참가자들이 레버리지비율 공시내용과 은행이 공표한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고 회계기준이 다른 국가들 간에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레버리지비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 일관성 있고 공통적인 공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동 공시와 재무제표가 일치하도록 해야 함

42. 바젤위원회는 레버리지비율 구성에 대한 공시의 일관성 및 이용시 편리성을 높이고 일관성 없는 공시 양식으로 야기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제영업 영위은행이 공통양식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음

---

26) 이러한 신용환산율(CCF)은 바젤 II 표준방법에 명시된 신용환산율과 동일하며 다만, 10%의 하한(floor)이 적용됨. 즉, 표준방법에서 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되는,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약정, 차입자 신용 악화에 따라 사실상 자동 취소되는 약정 등은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산정시 10% 신용환산율이 적용됨

43. 주요 공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요약비교표: 은행의 회계상 총자산과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간 비교
- 공통공시양식: 주요 레버리지비율 규제요소의 내역
- 중요 불일치내역 설명: 은행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과 공통공시양식의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간 중대한 차이의 원인 설명
- 여타 사항 공시: 이하에서 기술

(a) 공시 시행일, 주기 및 위치

44. 각국 당국은 동 기준서에 명시된 공시기준을 늦어도 2015.1.1일까지 시행해야 하며 은행은 2015.1.1일 이후의 최초 재무제표 공표일로부터 동 공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45. 공시 주기: 동 기준서에 따른 공시는 아래 46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와 같은 주기(통상 분기 또는 반기)로 공표해야 함

46. 바젤Ⅱ 공시규정(Pillar 3)에 따라, 대형은행은 재무제표 공표 주기[27]와 관계없이 주요 자본비율과 구성요소를 분기 기준으로 공시해야 함. 레버리지비율이 자본규제의 중요한 보완수단이므로 바젤위원회는 동일한 규정을 레버리지비율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재무제표 공표 주기와 관계없이 "분자(기본자본)", "분모(익스포저)" 및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을 제6항에 따라 매분기 공시해야 함. 공시는 분기말 자료를 직전 3개 분기말 자료와 함께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다 짧은 주기(월평균 또는 일평균)의 수치를 일관성 있게 공시할 수 있음

47. 공시 위치: 공시 정보는 은행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최소한 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공개적 규제보고서에 게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연결경로(direct link)를 명시해야 함

27) 해당 공시기준(Pillar 3)은 바젤 II 규제의 제818항 참조

48. 은행은 이전 보고기간들(prior reporting periods)의 공시 관련 정보들도 웹사이트, 공개적 규제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함. 공시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공시는 아래의 공시 양식을 따라야 함

(b) 공시 양식

49. 요약비교표, 공통공시양식, 설명표, 중요 불일치내역 설명서 및 여타 공시 내용들은 다음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 양식들은 레버리지비율 계산에 사용된 값들과 은행이 공표한 재무제표에 사용된 값들 간 차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50. 상기의 차이는 제8항에 규정된 레버리지비율의 연결범위와 재무제표의 연결범위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의 자산측정 기준과 레버리지비율의 측정 기준이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음(예: 적격 헷지, 상계, 신용위험경감 인식 등에 대한 차이). 또한 내재된 레버리지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체계가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와 부외 익스포저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음

51. 아래의 양식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회계기준 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게 설계되었음. 다만 보고하는 은행[28]의 재무상태표가 매우 복잡할 경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c) 요약 비교표

52. 은행은 분기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표 1>의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간의 일치(reconciliation) 여부를 보고해야 함

- 1행: 은행 연결재무제표 총자산 기입
- 2행: 회계목적상 연결대상이나 규제목적상 연결대상은 아닌 자회사(은행, 금융사, 보험사 또는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액 기입

28)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통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나, 은행은 공시된 재무제표내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과 레버리지비율 산정에 이용되는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간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조정해야 함

- 3행: 회계체계에 따라 재무상태표로 인정되지만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측정대상이 아닌 수탁자산 기입(주석 4 참조)

- 4~5행: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 기입(즉, repo와 여타 유사한 담보부 대여)

- 6행: 부외 항목(39항에 따라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익스포저) 기입

- 7행: 기타 조정항목 기입

- 8행: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1~7행 항목의 합과 같으며 <표 2>의 22행과 일치) 기입

<표 1> 회계기준 자산 및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간 요약비교표

	항 목	해당 금액
1	은행 연결재무제표 총자산	
2	회계목적상 연결대상이나 규제목적상 연결대상은 아닌 자회사에 대한 투자액	
3	회계처리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측정대상이 아닌 수탁자산	
4	파생상품	
5	증권금융거래(SFT)	
6	부외 항목(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익스포저)	
7	기타 조정항목	
8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	

(d) 공통공시양식, 설명표, 주요 불일치내역 설명 및 여타 공시정보

53. 은행은 아래 <표 2>에 따라 분기말 기준으로 ⅰ)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ⅱ) 파생상품 익스포저 ⅲ)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ⅳ) 여타 부외 항목의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기본(Tier 1)자본, 총 익스포저 및 레버리지비율도 보고해야 함

54. <표 2> 22행에는 6항에 따라 산출된 분기말 레버리지비율(%)을 보고해야 함

55. 재무제표와의 일치 : 은행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제외)과 공통공시양식 1행의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간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그 원인을 상세히 공시해야 함

56. 레버리지비율의 기간별 중대 변화: 은행은 금기말 레버리지비율이 전기말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 주요 원인(key drivers)을 분자, 분모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함

<표 2> 레버리지비율 공통공시양식

	항 목	레버리지 비율 체계
▪ 재무상태표 익스포저		
1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를 제외한) 재무상태표 항목(담보 포함)	
2	(기본(Tier 1)자본 산출시 공제되는 자산)	
3	총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 제외)(1~2행의 합)	
▪ 파생상품 익스포저		
4	재무상태표상 평가금액(대체비용)(현금변동증거금은 제외)	
5	잠재 익스포저(add-on amounts)	
6	제공된 파생담보 합계(회계체계에 따라 B/S 자산에서 공제된 경우)	
7	(공제 대상 현금변동증거금)	
8	(대고객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청산소와의 파생상품거래)	
9	신용파생 매도의 조정된 유효명목액	
10	(조정된 유효명목액 상계액 및 신용파생 매도의 추가항목 공제액)	
11	총 파생상품 익스포저(4~10행의 합)	
▪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12	총 증권금융거래 자산(상계 전, 매도거래 조정 후)	
13	(총 증권금융거래 자산의 미수 현금과 미지급 현금의 상계 금액)	
14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 익스포저	
15	중개거래(agent transaction) 익스포저	
16	총 SFT 익스포저(12~15행의 합)	
▪ 여타 부외 익스포저		
17	부외자산의 총 명목금액	
18	(신용환산율 적용에 따른 조정액)	
19	부외 항목(17~18행의 합)	
▪ 자본 및 총 익스포저		
20	기본(Tier 1)자본	
21	총 익스포저(3, 11, 16, 19행의 합)	
▪ 레버리지비율		
22	바젤III 레버리지비율	

57. 아래의 <표 3>은 공통공시양식의 각 행에 대한 설명표로서 기준서상 관련 항목도 명시하고 있음

<표 3> 공통공시양식에 대한 설명표

행	설 명
1	15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자산
2	9, 16항에 의해 결정된 기본(Tier 1)자본의 공제 부분은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서도 제외됨(음수 표시)
3	1, 2행의 합계
4	19~21항, 26항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대체비용(28항에서 규정한 익스포저 포함)에서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이 차감되며, 19~21항, 26항에서 허용된 상계는 인정
5	19~21항에 따라 산출된 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한 잠재 익스포저(add-on amount)
6	24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금액
7	26항에 따라 현금변동증거금 제공으로 익스포저에서 차감되는 미수자산(receivables assets)(음수 표시)
8	27항에 따른 대고객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청산소와의 파생상품거래로서 레버리지비율 익스포저에서 제외되는 금액(음수 표시)
9	30항에 따라 조정된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액(즉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감소분을 차감한 유효명목액)
10	30항에 따라 조정된 신용파생 매도의 유효명목 상계액 및 31항에 따라 차감된 신용파생 매도의 잠재 익스포저(add-on amount)(음수 표시)
11	4~10행의 합계
12	총 증권금융거래 자산(상계를 반영하지 않으나 주석 19에 따라 적격중앙청산소와의 계약이 갱신된 경우, 33항 (ⅰ)에 따른 일부 수취 증권, 34항에 따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조정)
13	33항 (ⅰ)에 따른 증권금융거래의 미수 현금(cash receivables)과 미지급 현금(cash payables) 간의 상계 금액(음수 표시)
14	33항 (ⅱ)에 따른 증권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15	35~37항에 따라 결정된 중개거래(agent transaction) 익스포저
16	12~15행의 합계
17	총 부외 익스포저 명목금액(39항에 따른 신용환산율 적용 전)
18	39항에 따라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결과 감소한 금액(음수 표시)
19	17~18행의 합계
20	10항에 따라 결정된 기본(Tier 1)자본
21	3, 11, 16, 19행의 합계
22	54항에 따른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58. 일반적으로 요약비교표, 공통공시양식, 설명표[29]가 국가 간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함. 다만 각국 당국은 설명표에서 바젤 Ⅲ 체계의 관련 항 이행에 필요한 국내규정을 언급할 수 있음(행 번호는 변경 불가). 그러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요약비교표와 공통공시양식은 변경할 수 없음

29) 개별은행은 설명표를 공시할 필요가 없음

Ⅶ. 경과 조치 (Transitional arrangements)

59. 레버리지비율의 이행기간은 2011.1.1일부터 시작되었음. 동 기간 중 바젤위원회는 레버리지비율 자료를 반기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의 설계와 최소비율 3%가 금융싸이클 전 기간에 걸쳐 그리고 영업모델이 다른 경우에도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게 됨. 또한 각국 회계체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회계 기준과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임

60. 이행기간은 감독모니터링(supervisory monitoring) 기간과 병행운영(parallel run) 기간으로 구성:

- 감독모니터링 기간은 2011.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합의된 레버리지비율 및 그 구성요소를 추적할 수 있는 양식(templates) 개발에 중점을 두었음

- 병행운영기간은 2013.1.1.일부터 2017.1.1일까지이며 레버리지비율과 그 구성요소가 보고되고 추적됨. 공시는 2015.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바젤위원회는 공시의 이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임

61. 병행운영기간 동안의 모니터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이 2017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8.1.1일부터 최저비율규제(Pillar 1)로 시행될 계획임

부 록*

*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바젤 Ⅱ 관련 항목들을 요약한 것임

파생상품 익스포저

잠재 익스포저(PFE) 산출을 위한 추가항목 환산율(add-on factors)

1. 다음의 추가항목 환산율(add-on factors)은 잔존만기에 따라 파생상품에 적용됨

	이자율	외환 및 금	주 식	귀금속(금 제외)	여타 상품
1년 이하	0.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주 1) 원금교환이 여러번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표에 언급된 추가항목 환산율에 계약상 남아있는 결제 횟수를 곱해야 함

2) 특정일에 금액을 결제하고 그 날 계약의 시장가치가 0이 되어 계약조건이 조정(reset)되는 경우, 잔존만기는 다음 조정일(reset date)까지임. 이자율계약이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계수의 하한이 0.5%로 설정됨

3) 표에 해당되지 않는 선물, 스왑, 옵션매입, 유사 파생상품 계약은 "기타 상품(other commodities)"으로 분류함

4) 동일통화내 변동금리간 이자율 스왑의 경우 미래의 잠재 신용익스포저를 측정하지 않고 시가평가로만 신용익스포저를 계산함

2. 감독당국은 추가항목(add-on for PFE)이 표면상 명목액(apparent notional amounts)이 아닌 유효명목액(effective notional amounts)에 기초하여 산출되도록 해야 함. 특히 명목금액이 구조화 또는 레버리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 은행은 유효명목액을 사용하여 잠재 익스포저(PFE)를 산출해야 함

3. 다음의 추가항목 환산율(add-on factors)은 단일준거자산(single-name) 신용파생에 적용됨

	보장매입자	보장매도자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s)		
준거자산이 적격(투자등급)인 경우	5%	5%
〃 투기등급인 경우	10%	10%
신용부도스왑(CDS)		
준거자산이 적격(투자등급)인 경우	5%	5%**
〃 투기등급인 경우	10%	10%**

주 : 위 표의 추가항목 환산율들은 잔존만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신용부도스왑의 보장매도자는 기초자산 신용이 양호하나 보장매입자가 지급불능일 때 동 거래를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표의 추가항목 환산율이 적용됨. 단, 추가항목 환산율은 미지급 프리미엄까지를 한도로 함

4. 신용파생이 "최초부도 거래"(first-to-default transaction) 조건인 경우 추가항목(add-on for PFE)은 기초자산 바스켓 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의해 결정됨. 즉 바스켓에 부적격 항목들이 있으면 부적격 준거채무의 추가항목을 사용해야 함. "n차 부도 거래"(n^{th}-to-default transaction) 조건인 경우에는 n번째로 낮은 신용등급에 의해 결정됨

5. "적격(qualifying)"의 범주는 공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이 발행한 증권들과 아래의 증권들을 포함함

   - 각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최소 2개의 신용평가기관이 투자등급[30] (investment grade)으로 평가한 증권

   - 하나의 신용평가기관이 투자등급으로 평가하고 각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다른 신용평가기관(단,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음)이 투자등급 이상(not less than)으로 평가한 증권

   - 평가등급은 없으나 보고 은행(reporting bank)이 투자등급 또는 투자등급에 필적한다고 간주하고 동 증권의 발행자가 공인 거래소에 상장한 증권이 있으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감독당국은 이러한 "적격"기준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앞서 기술된 3개 기준 중 마지막 기준은 보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함. 은행이 레버리지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30) 무디스 Baa 등급 이상 또는 S&P BBB 등급 이상

(prompt remedial action)를 취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각국 감독당국은 재량적으로 현 레버리지 규제체계를 실행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적격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도 적격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음

7. "적격(qualifying)"범주에는 투자등급으로 간주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레버리지 규제체계와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함

양자 간 상계(Bilateral netting)

8.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을 위해 다음사항이 적용됨:

(a) 은행은 갱신(novation)되는 거래를 상계할 수 있음. 동 갱신 하에서는 은행과 거래상대방 간에 통화와 만기일이 같은 모든 의무들이 자동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단일 금액(one single amount)이 법적으로 이전의 전체 의무들을 대신하게 됨

(b) 은행은 또한 (a)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 방식(legally valid form of bilateral netting)이 적용되는 거래를 상계할 수 있음

(c) (a), (b)의 경우 해당 은행은 감독당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계약,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함

(ⅰ) 단일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상계 계약(netting contract or agreement). 동 계약에 의해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예: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개별 거래들의 시장가치(mark-to-market values)의 순계(net sum)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 또는 지급의무를 가짐

(ⅱ) 법적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논리적인 법적 견해. 동 견해를 통하여 관련 법원과 행정당국이 은행의 익스포저가 아래의 법들에 근거하여 상계된 금액(net amount)임을 알 수 있어야 함

- 거래상대방이 인가를 받은 국가의 법. 만약 거래상대방의 해외지점이 관련될 경우에는 동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법
- 개별 거래를 통제하는 법
- 상계 계약을 통제하는 법

각국 감독당국은 필요시 관련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상계가 관련국가의 법[31]에 의해 실행가능함을 확인해야 함

(iii) 관련법의 개정시에도 상계계약의 법적 성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절차

9. 종료 조건(walkaway clauses)이 있는 상계계약은 레버리지비율 산출목적상의 상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종료 조건이란 거래 일방의 파산시(파산자가 순채권자인 경우에도) 파산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이 파산자에게 제한적인 지급을 하거나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말함

10. 상계 계약에 의한 신용익스포저(credit exposure)는 시가평가된 순대체비용(net mark-to-market replacement cost, +인 경우에만 산출)과 명목기초자산에 근거한 잠재 익스포저(add-on)의 합으로 산출됨. 상계된 거래의 잠재 익스포저(A_{Net})는 총 잠재 익스포저(A_{Gross})와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NGR)으로 조정된 총 잠재 익스포저(A_{Gross})의 가중평균과 같음. A_{Net}은 아래의 식으로 산출됨

$$A_{Net} = 0.4 \cdot A_{Gross} + 0.6 \cdot NGR \cdot A_{Gross}$$

· NGR: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32]에 따른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net replacement cost/gross replacement cost)

· A_{Gross}: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들의 개별 잠재 익스포저의 합계(명목계약금액×추가항목 환산율)

---

31) 따라서 관련 감독당국이 법적 실행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상계계약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

32) 금융당국은 NGR에 대한 계산법으로 거래상대방별 계산법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합산방식(aggregate basis for all transactions) 계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감독당국이 두 가지 계산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한 경우, 동 계산법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합산방식 계산법 적용시,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음수인 순 현재 익스포저(net negative current exposure)는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양수인 순 현재 익스포저(net positive current exposure)를 상쇄할 수 없음. 즉 NGR 계산시 사용하는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순 현재 익스포저는 순 대체비용 최대치 또는 0임. 합산방식에서 NGR은 개별적으로 법적 유효한 상계계약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신용상당액(credit equivalent amount)은 적절한 거래상대방 위험가중치 카테고리에 할당되어야 함.

11. 선물환계약이나 명목계약액의 현금흐름(cash flows)이 같은 여타 유사 거래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 계산에 있어 명목계약액은 각 평가일(value date)에 각각의 통화로 받는 순수취액(net receipts)으로 정의됨. 이는 만기일과 통화가 동일한 거래들을 상계할 수 있는 계약이 현재 익스포저(current exposure)와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낮출 것이기 때문임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33)]

12. 적격 마스터상계계약: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상계계약이 법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증권금융거래를 규정하는 마스터상계계약의 효력은 거래상대방별로 인정됨. 동 계약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a) 거래상대방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동 계약 하의 모든 거래를 시의 적절하게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b) 종료된 거래의 손익을 상계하여 단일채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c) 채무불이행시 담보의 즉각적 현금화나 상계(setoff)를 허용해야 함

(d) 상기 (a)와 (c)의 조건에 기인하는 권리와 함께,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채무불이행 발생 즉시 각 관련 국가에서 법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함

13.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간의 상계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인정됨

(a) 모든 거래는 매일 시가평가(marked-to-market) 되어야 함

(b) 거래에 사용된 담보는 은행계정에서 적격 금융담보로 인식되어야 함

33)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마스터상계계약(Master Netting Agreement) 관련 규정은 제33항 (ii)에 설명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를 측정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함

부외 항목

14. 레버리지비율 규제목적을 위해 부외 항목(OBS, off-balance-sheet items)은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이용하여 신용 익스포저 상당액(credit exposure equivalents)으로 전환해야 함

15. 원래의 만기가 1년 이하인 유동화증권의 유동성공급약정 이외의 약정은 20%의 신용환산율을, 1년 초과인 약정은 50%의 신용환산율을 각각 적용함. 다만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약정(무조건부 취소가능약정) 또는 차입자 신용 하락시 자동 취소되는 약정은 10%의 신용환산율[34]을 적용함

16. 일반적인 채무보증(예: 대출과 증권에 대한 금융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증신용장), 인수(예: 인수 성격의 배서) 등의 직접 신용을 대체(direct credit substitutes)하는 항목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함

17. 선도자산매입(forward asset purchases), 선도예금(forward forward deposits) 및 일부 대출이 발생한 대출약정을 나타내는 일부 지불된 주식 및 증권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함

18. 일부 거래 관련 불확정 신용 약정(예: 이행보증, 특정거래 관련 보증신용장)은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함

19. 증권발행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ies), 회전인수한도(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는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함

20. 상품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자동 결제되는 단기 무역신용(예: 선적에 의해 담보되는 화환신용장)은 2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함

---

34) 일부 국가의 소매고객용 신용약정은 동 약정조건 상 은행이 소비자보호 및 관련 법규 하에서 허용되는 한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21. 부외 항목에 대해 신용공여약정을 제공하는 거래의 경우, 은행은 적용가능한 2개의 신용환산율 중 낮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해야 함*

*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역자 註)

22. 부외의 모든 증권화 익스포저(바젤 II 제576항 및 제578항에 규정된 적격 유동성 공급 약정 또는 적격 자산관리자 선급금 약정 제외)는 100%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며 모든 적격 유동성지원 약정에는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함. 각국 재량에 따라, 자산관리자 선급금 약정 중 미인출 한도 또는 사전통지 없이 무조건 취소가능한 유동성공급 약정은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기준서(원문)

Basel Ⅲ leverage ratio framework and disclosure requirements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 기준서

Basel Ⅲ leverage ratio framework and disclosure requirements

발행인 이 주 열 · 최 수 현
편집인 강 태 수 · 김 진 수
발행처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4년 5월 27일
제 작 리드릭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